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 강준현·김상희·김수흥

김회재 · 남인순 · 박상혁

박영순 · 양정숙 · 이개호

조오섭 · 최혜영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「지방세징수법」 등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법에 따르도록 타법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지방세관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현행법과 다르게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음.

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 · 면 · 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4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"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"을 "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지방세관계법"이란 「지방	4
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	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조	<u>「</u> 조
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제주특	세특례제한법」, 「제주특별자
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	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
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을	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
말한다.	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
	<u> 관한 특별법」</u>
5. ~ 36. (생 략)	5. ~ 3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